

관급공사 지역업체 우선 배정

2-1

회계과

소액수의계약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 계약 체결하고, 대형공사 시 공동도급 발주,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및 지역주민 근로자 고용 등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지방계약법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사업 발주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
 - 대상 : 종합공사 2억원이하, 전문공사 1억원이하,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, 물품·용역 5천만원 이하의 사업
- 대형공사 입찰시 공동도급(주계약자 방식) 발주,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, 지역 내 근로자 고용 및 건설장비 임대 적극 권장

□ 추진계획

- 소액수의계약 사업의 지역사업자와 계약 체결 확행
 - 2014년 체결율 : 89% (지역업체 1,170건 / 전체 수의계약 1,312건)
-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로 부실공사 예방 및 지역업체 보호
 - 공사 발주부서의 설계완료 전 공동도급 여부 우선 검토 및 적극 반영
- 대형공사 입찰 시 공고문에 지역업체 권장, 의무화 조건 명시
 - 지역내 근로자 75%이상 고용, 지역 생산자재 60%이상 사용, 지역업체 건설기계장비 사용 요청
- 계약 심사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설계반영 건의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실적 제한 입찰 시 관내 사업자의 실적 부족으로 참여 곤란
 - 발주부서 설계 시 공동도급제도 활용 및 분리발주 검토 후 계약의뢰
 -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방안 마련

- 수의계약 범위 확대
 종합공사 (2억원→ 5억원 이하), 전문공사 (1억원→ 2억원 이하), 전기·통신·소방공사 (8천만원→ 2억원 이하), 용역·물품 구매(5천만원→ 1억원 이하)
- 입찰 건 적격심사 기준 중 접근성(가산점) 항목 금액제한 확대 적용 (10억원 미만→ 100억 미만)
- 부당한 특약이나 특정 제품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지도
 - 발주부서 설계 시 신중한 검토 및 반영
 - 계약 심사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설계 반영 검토
- 페이퍼 컴퍼니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지역업체 보호
 - 공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협업으로 불법 하도급 업체 근절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

□ 기대효과

-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